

## ●사천해양경찰서공고 제2025-5호

「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년 05월 14일

사천해양경찰서장

###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개정(안) 행정예고

#### 1. 개정이유

「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」 재검토 기한(매 3년) 도래에 따른 고시 내용 검토 및 종전 고시 폐지 조치, 기한 변경

#### 2. 주요내용

가. 근거 법령 조항 변경 : 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제1항 → **제30조제1항**, 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제1항제7호 → **제64조제1항제4호**

나.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**1개소**(2017년 남해군 지정 **설리해수욕장**) 추가

– 남해군 설리해수욕장 물놀이객과 동력수상레저기구 활동자 상호간 충돌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해수욕장 개장기간 금지구역으로 지정

다. 금지구역 내용 변경 : 상죽암 유원지 무동력 영업구역 내 → 상죽암 유원지 영업구역 **위치(해점) 표기 및 금지구역도 별첨**

라. 재검토 기한 변경 :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431호)에 따라 2022년에서 **2025년**으로 변경

마. 부칙 : 종전의 사천해양경찰서 고시 **제2022-1호**는 폐지한다.

#### 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·단체 또는 법인은 2025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(교통레저계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

개 정(안)	수 정(안)	사 유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의견 제출방법 및 문의

1) 전자우편(이메일) : [chhz1964@korea.kr](mailto:chhz1964@korea.kr)

2) 전화/팩스 : 055-830-2449 / Fax : 055-830-2848

3) 주소 : (우)52539,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1길 59, 사천해양경찰서 교통레저계